

낙농품류 수입추천 요령

수출입 공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추천 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한다.

1987년 6월 30일

한국유가공협회장

- 다 음 -

1. 추천대상품목 :

CCCN		품 목 명	추천대상 품목명	자동추천품목 또는규격	비 고
0401	0000	밀크와 크림(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·건조 또는 감미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)	좌 동	}	1. 수급조절용
0402		밀크와 크림(저장에 적 합한 처리를 한것과 농축 건조. 또는 감미를 첨가 한것)			
	0100	웨 이	좌 동 (국산불능 품 목)		1. 조제분유 원료용 2. 사료용 (대용유원료)
	0201	가당한 탈지분유(웨이를 제외하며 분상 또는 입상 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.5% 이하의것)	좌 동		1. 수급조절용 2. 공업용 (카제인원료) 3. 사료용 (대용유원료)
	0202	기타 탈지분유(웨이를 제외하며 분상 또는 입상 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.5% 이하의것)	좌 동		
	0299	탈지분유를 제외한 기타 밀크(웨이를 제외하며 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.5%이하의 것)	좌 동		
	0300	밀크(웨이제외)와 크림	좌 동		1. 수급조절용

		(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.5%를 초과하는 것)			
	0400	기타 밀크(웨이제외)와 크림	좌 동	}	
0403	0000	버터	좌 동		1. 수급조절용
0404		치즈와 커어드	좌 동		1. 수급조절용
	0102	가공 치즈			2. 치즈원료용
	0101	기타 치즈			
	0200	커어드			
2107	0500	육아용 조제분유	좌 동	}	1. 조제분유용
					1. 페닐, 알라닌 성분을 제거한 특수조제분유(자동추천 품목)

2. 수입제한 :

국내외 경기동향, 국제수지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기 수입 추천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3. 추천기준 및 추천대상자 :

가. 추천범위 및 기준

유가공품 원료 및 사료수급상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량에 한함.

나. 추천대상자 :

- (1) 수급조절용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유가공협회
- (2) 조제분유 원료용은 관계법에 의하여 조제분유 가공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자.
- (3) 사료용은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대용유제조업 허가를 득한자.
- (4) 공업용은 공업용카제인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자.
- (5) 치즈원료용은 집유기반이 있는 유업체로서 관계법에 의하여 당해품목의 가공공장을 경영하고 있는자.
- (6) 조제분유는 육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는자로서 관계법에 의하여 조제분유 가공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자.

4. 처리기간 : 2일 이내

5. 구비서류 : 가. 수입허가(승인) 신청서 5부
 나. 물품매도확약서(원본·사본) 각 1부
 다. 관할 시, 도지사의 실수요자 및 소요량 확인서 1부 (조제분유 원료용, 공업용에 한함)
 라. 집유기반 확인서(치즈원료용에 한함) 1부
 마. 관할 시, 도지사의 생산시설확인서 1부
 (육아용조제분유)

— 부 칙 —

이 요령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